

#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내규

제정 : 2013. 03. 01

개정 : 2023. 12. 0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대상)** 이 내규의 적용 대상은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 한다.

## 제2장 학위 과정

**제3조(학위과정 선택)** ① 학위 과정은 “학위논문제출” 과 “논문대체” 의 두 과정으로 나뉘어진다.

② 학위 과정의 선택은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와 상의하여 해당 신청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학위과정 승인을 받은 자는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로부터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**제4조(학위 과정의 변경)** ① 학위 과정의 변경은 제3조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후에는 3학기, 4학기 시작 후 신청기간에 변경 할 수 있다. 다만, 신청기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,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1회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(수료생포함)

② 학위과정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학점(연구지도 학점 포함)을 신청할 경우, 추가로 수강신청 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,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수업 및 재학연한

**제5조(수업연한)**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(4학기)으로 한다. 다만, 2010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한 학생은 2년 6개월(5학기)로 한다.

**제6조(재학연한)**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하며,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2010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재학연한을 5년 6개월로 한다.

## 제4장 등록 및 학적변동

**제7조(등록)** ①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업연한 경과자에 대한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,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등록금 대체 및 반환)** ① 신입생 및 군 입대 휴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대체 받을 수 있다.

② 수업료를 납입한 후 자퇴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. 다만, 징계에 의한 제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**제9조(휴학)**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학할 수 있다.

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1회로 하며 연속하여 2개 학기를 휴학할 수 없다.

③ 휴학원서 제출은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5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휴학 횟수는 재학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임신·출산·육아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학 횟수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.

⑤ 질병, 군복무 또는 해외근무 및 임신·출산·육아에 따른 휴학기간은 제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복학)**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.

② 복학원서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(2월, 8월)에 신청하여야 하며,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복학원서 제출 시 군 전역자는 전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제적 및 자퇴)** ①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② 휴학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

③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자퇴를 허가한다.

**제12조(학과 변경)** ① 학과 변경은 입학 후 1개 학기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이미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② 신·구 학과주임교수 또는 신·구 지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‘학과변경신청원’을 교학행정팀에 제출하고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장이 학과 변경 허가 여부와 전항의 인정과목을 결정한다.

## 제5장 학점 취득

**제13조(학기당 취득 학점)** ① 학기당 취득 학점은 최대 9학점으로 한다. 단, 연구지도 학점은 추가 인정한다.

- ② 연구지도학점은 3학기부터 이수한다.
- ③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.

**제14조(수료요구 학점)**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 이상, 연구지도 6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

- ② 전공은 최소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과목의 교차수강은 최대 9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.
- ③ 기업가정신과창업 교과목을 졸업 전까지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 계약학과는 해당하지 않는다.

**【학위논문】**

| 학기 | 전공과목     |      | 계    |
|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| 전공(공통포함) | 연구지도 |      |
| 1  | 9학점      |      | 9학점  |
| 2  | 9학점      |      | 9학점  |
| 3  | 6학점      | 3학점  | 9학점  |
| 4  |          | 3학점  | 3학점  |
| 계  | 24학점     | 6학점  | 30학점 |

**【연구논문-대체논문】**

| 학기 | 전공과목        |      | 계    |
|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| 전공(공통포함)    | 연구지도 |      |
| 1  | 9학점         |      | 9학점  |
| 2  | 9학점         |      | 9학점  |
| 3  | 6학점         | 3학점  | 9학점  |
| 4  | 6학점(논문대체이수) | 3학점  | 9학점  |
| 계  | 30학점        | 6학점  | 36학점 |

**제15조(성적 평가)**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, 성적등급 F는 학점 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| 점 수 | 100~<br>95이상 | 95미만~<br>90이상 | 90미만~<br>85이상 | 85미만~<br>80이상 | 80미만~<br>75이상 | 75미만~<br>70이상 | 70미만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
| 등 급 | A+           | A             | B+            | B             | C+            | C             | F    |
| 평 점 | 4.5          | 4.0           | 3.5           | 3.0           | 2.5           | 2.0           | 0    |

**제16조(학점 인정)** ① 수강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일 때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.

- ②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.
- ③ 매학기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## 제6장 학위취득 자격시험

**제17조(자격시험)** ①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에서 시행하는 “학위취득 자격시험”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“영어시험”과 “종합학력시험”으로 한다.

**제18조(영어시험)** ① 영어시험은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이 주관하여 시행한다.

② 시험은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

③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.

④ 영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| 공인시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TOEFL  | TOEIC | TEPS |
|---|--------|-------|------|
| 취득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IBT:71 | 750   | 600  |
| ※ 매년 3월1일, 9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. |        |       |      |

**제19조(종합학력시험)** ① 종합학력시험은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시행하고, 시험지와 채점한 답안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험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하게 전임교원의 과목 출·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학과주임교수 책임하에 출·채점을 할 수 있다.

③ 시험은 18학점을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

④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.

## 제7장 논문 제출

**제20조(논문지도교수의 선정)**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,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논문지도교수는 2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지 않는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임교원이 아닌 자도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.

③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 제출 한 학기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.(수료생 포함)

**제21조(논문심사 신청)**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심사신청서, 요약서 및 심사용 논문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논문심사)** 학위논문의 심사는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3조(논문재심사)** ① 학위논문 심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, 학위과정의 수수료만을 인정한다.

**제24조(논문제출)** ① 학위청구논문은 재학연한 이내에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 휴학기간은 논문제출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전항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 이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학위논문 심사의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 5부를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학위취득 자격)**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학위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.

1. 전공과목 24학점, 연구지도 6학점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,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.
2.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.
3. 연구윤리교육 이수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.

## 제8장 논문 대체

**제26조(논문대체 학위취득 자격)**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논문대체 과정으로 학위취득 자격을 갖춘 것으로 한다.

1. 전공과목 30학점, 연구지도 6학점을 포함한 36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,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.
2. 전 호의 30학점 중 6학점은 4학기에 이수하되 학과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. 다만, 6학점에 대해서는 각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3.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자.

② 연구윤리교육 이수자로서 학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.

③ 위의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식품영양정보학과는 학과내규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과 내규에서 규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등록금 납부)** ① 논문대체 과정자가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4분의 1,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학위 수여

**제28조(학위수여)**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의 학위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취득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 또는 논문대체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위취득 요건을 갖춘 자를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.

**제29조(학위취소)**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**제30조(학위과정 수료)** ① 수료라고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위취득자격에 필요한 졸업요구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전 과목의 성적평균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수료 인정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.

## 제10장 장학금 및 장학생선발위원회, 상벌

**제31조(장학금)** ①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[별표 1] “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”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장학금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학행정팀에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31조의 2(장학생선발위원회)**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.

②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기능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③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 구성은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학과 주임교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이 위촉한다. 간사는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장학생선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2조(징계)** 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## 제11장 운영위원회

**제33조(운영위원회)**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34조(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장이 된다.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.

**제35조(운영위원회 기능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,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
2. 학과(전공)의 설치와 폐지 및 명칭변경 등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, 과목 개설 및 교·강사 배정에 관한 사항
4.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36조(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발령 또는 위촉기한으로 하며 추가 위촉 위원은 매 학년도 단위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7조(운영위원회 회의)**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12장 학과운영위원회

**제39조(학과운영위원회)**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소속 학과 중 주임교수를 특별교원 또는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위촉한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40조(학과운영위원회 구성)** ① 학과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임교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소속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학과주임교수가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41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의 임기는 주임교수 위촉기한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42조(학과운영위원회 기능)**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,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
2. 학과(전공)의 설치와 폐지 및 명칭변경 등 교육편제 조정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, 과목 개설 및 교·강사 배정에 관한 사항
4. 학과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

**제43조(학과운영위원회 회의)** 학과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소속 대학 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년 2회 이상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44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### 제13장 내규 개정

**제38조(내규 개정)** ① 본 내규의 개정은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표, 교차수강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개정 확정한다.

##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내규는 2013. 3. 1. 부터 시행한다.(최초 내규의 대학원위원회 심의 의결:2013.07.01.)

**제2조(적용)** 이 내규는 2013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제3조(기타)** 이 내규에서 예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
#### 부칙[2017.09.01. 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내규는 2017. 9. 1. 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칙[2018.05.19. 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내규는 2018. 5. 19.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개정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칙[2018.09.15. 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내규는 2018. 9. 15.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개정 내규는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칙[2019.03.30. 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내규는 2019. 3. 30.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칙[2020.09.04. 개정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개정 내규는 2020.09.04. 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개정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[2020.12.23. 개정]**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.12.23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개정 내규는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[2023.04.12. 개정]**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.04.12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개정 내규는 2023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[2023.12.01. 개정]**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.12.01. 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[2023.12.01]

| 장학명            | 지급대상   | 지급기준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사조교A-1        | 우리대학 학사조교  |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험실습보조TA       | 우리대학 수업조교  | 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사조교A          | 우리대학 학사조교  | 수업료 100%                   |
| 양영장학금          | 우리 대학교 재직 교직원 자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50%                    |
| 양영장학금(기타)      | 우리 대학교 산하 재직 교직원(정규직)의 자녀<br>(학교법인,부속병원,부속중고등학교) | 수업료 50%                    |
| 단국장학금          | 우리 대학교 학부 졸업자<br>(학점은행제 졸업자 제외)                  | 입학금 100%                   |
| 군위탁장학금         | 군위탁생   | 수업료 50%                    |
| *대내장학금         | 일반 재학생   | 수업료 15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기업체 재직자  | 수업료 2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본교 직원(계약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5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개인사업자, 법인, 기타 재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2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MOU협약에 의한 기관 및 기업<br>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         | MOU협약에 따름<br>+ 수업료의 20~25% |
| 봉사장학금<br>(원우회) | 원우회장   | 수업료 5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원우회 부회장  | 수업료 4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원우회 총무(임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30%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전공대표   | 수업료 20%                    |
| 복지장학금          | 기초수급대상자,차상위계층자,장애인<br>(증빙서류 제출 필수)               | 입학금 100%<br>수업료 50%(정규학기)  |
| 입학기여장학금        | 재학생 중 신입생 추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업료 10%/1명                 |

- \* \*대내장학금은 총 50% 초과하지 아니한다
- \* 입학기여장학금은 (기지급+교외) 장학금이 50%가 이상되는 경우 지급기준의 1/2만 지급
- \* 장학금 대상자는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장학금 혜택이 있음
- \* 본교직원(정규직)은 단체협약사항에 따른다
- \*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격여부는 우리 대학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함
- \* 그 이외의 사항은 학칙에 준한다